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5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신설(문대림의원안)	2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7. 30.
-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104조의3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신설

(문대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36 신설) ○ 공제대상: 식료품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입비용 ○ 공제율: 중소·중견기업 30%, 대기업 25% ○ 적용기한: 2030.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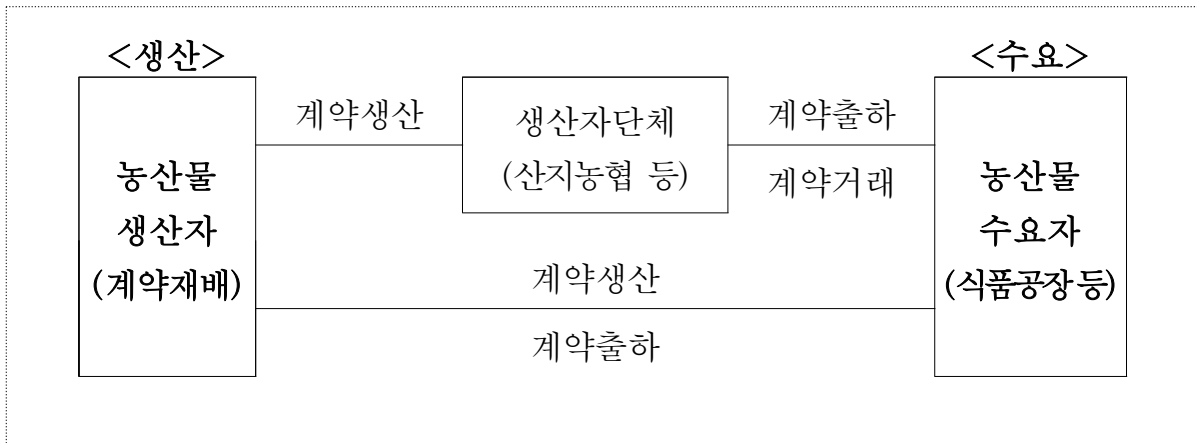
* 문대림의원안 2025. 7. 30. 발의(의안번호 11858)

□ 개정안은 식료품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사업소득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계약재배란 농산물 생산자와 농산물 수요자가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에 따

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에 따라 재배하는 방식을 의미함.

[계약재배 구조]



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 6.

□ 개정안은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전 계약을 통하여 미리 확실한 판로를 확보한 이후 정해진 물량을 생산할 수 있고, 농산물 수요자는 사전에 계약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구조이므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실천계획으로서 국산 밀, 콩, 과채류 등의 계약재배 확대를 제시한 바 있고¹⁾,

2025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매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음.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계약재배 방식을 채택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업이 계약재배 방식을 채택하였을 때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 시장가보다 높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아 농가에서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있어 계약재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허용할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계약재배 방식을 채택할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공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서 “계약재배”라는 용어는 빈번히 사용되지만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다는 점, 2025년 8월 「농수산물 유통

1)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 4.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계약생산”이라는 용어를 “계약거래”로 대체하였음을 감안할 때, 세액공제 요건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2)에 따른 계약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먼저 식품·외식 기업과 계약재배한 생산자단체에 품질 개선 교육비, 시설·장비 임차비, 원료 운송비 등 최대 4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밀·콩·배추 등을 계약재배하여 구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자금 등 소요자금에 대하여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계약재배 농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원료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 6월부터 온라인 도매시장 내 계약재배 원료 플랫폼을 시범운영하고 있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 8. 27. 시행예정, 법률 제21031호)」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상품의 원재료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므로 추가적인 세액 공제는 과도한 지원에 해당하고, 식료품 제조업에 한하여 구입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개정안은 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